

대전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단118576 판결 [(일부)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나10602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19가단118576 판결

전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피 고 1. F

2. G

3. H

4. I

5. J

소송대리인 K

6. L

7. M

8. N

9. O

피고 8, 9의 소송대리인 P

10. Q(선정당사자)

변 론 종 결 2020. 12. 10.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각 원고 A, B, C에게, (1) 피고 F, G는 각 487,2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 1.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23,30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H은 각 648,10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 1.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23,30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피고 I, J, L, M, N, O은 각 449,4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 1.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3,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4) 피고 선정자 R, S, 선정당사자 Q, 선정자 T은 각 101,0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 1.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3,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D에게, (1) 피고 F, G는 각 189,702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H은 378,69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I, J, L, M, N, O은 각 251,6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E에게, (1) 피고 F, G, H은 각 297,5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 1.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23,30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I, J, L, M, N, O은 각 197,8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 1.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3,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피고 선정자 R, S, 선정당사자 Q, 선정자 T은 각 101,0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 1.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는 매월 각 3,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대전 동구 U 대 129㎡(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V 대 83㎡(이하 ‘이 사건 제2토지’)와 W 대 11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는 X가 1998. 7. 29. 낙찰을 원인으로 1998.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X는 이 사건 제1, 3토지 양지상 위에 1999. 10. 5.경 단층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X가 2005. 9. 7.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원고 A, B, C, D는 이 사건 제1, 2, 3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4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 D의 지분에 관하여 2015. 7. 9. 매매를 원인으로 2015. 7. 22. 원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1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9. 6. 20. Y 주식회사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전부를 이전하였다.

마. 피고 F, G는 별지 2 부동산목록(이하 '이 사건 제2목록') 제1기재 건물의 각 1/2 지분소유권자, 피고 H은 이 사건 제2목록 제2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I는 이 사건 제2목록 제3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J는 이 사건 제2목록 제4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선정자 R은 이 사건 제2목록 제5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L는 이 사건 제2목록 제6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M, N, O은 이 사건 제2목록 제7기재 건물의 각 1/3 지분소유권자, 피고 선정자 S은 이 사건 제2목록 제8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이하 이 사건 제2목록의 각 건물을 통틀어 '피고들 소유 건물'), 피고 선정자 T과 피고 선정당사자 Q은 대전 동구 Z 대 1,076㎡의 공유지분권자이다.

바.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별지 1 부동산목록(이하 '이 사건 제1목록') 제1기재 토지(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첨 법원 감정도 10, 9, 11,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 이하 'ㄱ'부분)와 제2기재 토지(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첨 법원 감정도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5㎡, 이하 'ㄴ'부분)은 아래와 같이 통행로(이하 위 'ㄱ'부분과 'ㄴ'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 피고 F, G 공유의 이 사건 제2목록 제1기재 건물은 대전시 동구 AA 대지 상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H 소유의 이 사건 제2목록 제2기재 건물은 위 AB 대지 상에 위치하고 있어, 각 해당 건물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ㄱ'부분과 'ㄴ'부분인 이 사건 통행로가 이용되고 있다.

○ 피고 I 소유의 이 사건 제2목록 제3기재 건물은 위 AC 대지 상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J 소유의 이 사건 제2목록 제4기재 건물, 피고 선정자 R 소유의 이 사건 제2목록 제5기재 건물, 피고 L 소유의 이

사건 제2목록 제6기재 건물, 피고 M, N, O 공유의 이 사건 제2목록 제7기재 건물, 피고 선정자 S 소유의 이 사건 목록 제8기재 건물은 위 Z 대지 상에 위치하고 있어, 각 해당 건물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ㄴ'부분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사. 피고들 소유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은 198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지어져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최근 그 일대가 혁신도시지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가격이 상승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F, G, H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를, 피고 I, J, L, M, N, O, 선정자 R, 선정자 S, 선정자 T, 선정당사자 Q은 원고들 소유의 ‘ㄴ’부분 토지를 각 권원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면서 부당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고, 설령 피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자인 원고들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내지 보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원고들과 그 피상속인인 X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무상으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툼다.

나.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라 제1, 2호증, 을 마제1호증, 을바 제1, 2호증, 을더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나타난 사실들로, ① 이 사건 통행로는 폭이 2~3m에 불과한 도로인 사실, ② 이 사건 통행로는 당초 X가 1998.경 경매로 낙찰받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일부인데,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X가 낙찰받을 당시 이미 ‘ㄴ’부분은 인근 주민 및 일반 공중의 교통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 ③ X는 이 사건 제1, 3토지 지상에 1999.경 건물을 건축하면서 ‘ㄱ’부분을 통행로로 제공하였으며 그 건물에서 ‘ㄱ’부분과 ‘ㄴ’부분을 통해서 공로로 출입해 온 사실, ④ X가 생존할 당시 및 그 승계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 ⑤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당초 AD에서 수십 필지로 분할된 연혁이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고, 여기에 민법 제220조에 의하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하는 것(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X와 그 승계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는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 폐지될 때까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피고들과 인근 주민 및 일반 공중에게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무상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내지 보상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

판사 문보경

선 정 자 명 단

1. Q

2. R

3. S

4. T

끝.

대전지법 2019가단118576 부당이득금반환 2020.06.09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

법원감정도

토지소재 : 대전광역시 동구 [] []

사건번호 : 2019가단 118576 부당이득금반환

현황 표시		영장	
범례	영장	지적도선	도로시용부분
지번	부호	면적(㎡)	비고
[]	가	17	10, 9, 11, 12, 10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내 부분 (도로시용부분)
[]	나	75	1~10,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내 부분 (도로시용부분)

2020 년 06 월 05 일

감정인 : 지적기사 []

(별지 1)

부동산 목록

1. 대전 동구 대 129㎡ 중

별첨 범위 감정도 10, 9, 11,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

2. 대전 동구 대 83㎡ 중

별첨 범위 감정도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5㎡ 끝.

(별지 2)

부동산 목록

1.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시원트 벅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55.64㎡

2층 14.78㎡

2.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새원벅돌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45.88㎡

2층 26.91㎡

3.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시원벅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주택 69.51㎡

2층 주택 40.56㎡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건물 7.47㎡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건물 2.55㎡

4. 대전광역시 동구

연화조 및 세면벽돌조 스라브층

평가건 주택 81.3㎡

5. 대전광역시 동구

연화조스라브층 단층주택

72.03㎡

세면벽돌조스라브층 단층창고

1.98㎡

세면벽돌조스라브층 단층변소

1.19㎡

6. 대전광역시 동구 호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4.08㎡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

창고 5.06㎡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 1.98㎡

7. 대전광역시 동구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3.42㎡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4.43㎡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면소 0.99㎡

8. 대전광역시 동구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제2종근원생활시설

1층 82.15㎡

2층 86.91㎡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건물

6.31㎡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